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004호 2016년 7월 29일(금)

공 고

-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2
- 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 6

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16년 7월 29일

속 초 시 장

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나. 도로위치 : 도로지정 조서 참조

다. 공고기간 : 2016. 7. 29. ~ 8. 19. (21일간)

라. 도로지정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(건축허가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속초시 노학동	1000-512	전	4	4	최홍영	속초시 노학동 1000-138번지 단독주택 2016-건축디자인과- 신축허가-44 (2016. 5. 11.)	*건축주 :최홍영
	1000-513	전	18	18	황옥주	속초시 노학동 1000-509번지 단독주택 2015-건축디자인과- 신축신고-84 (2015. 12. 4.)	*건축주 :황옥주

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
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비치(열람가능)

사. 문의사항 :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(033-639-209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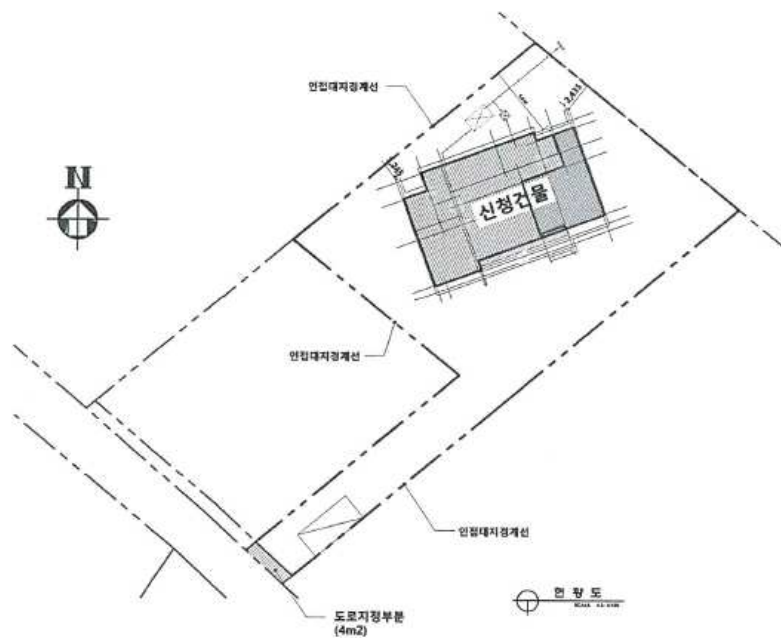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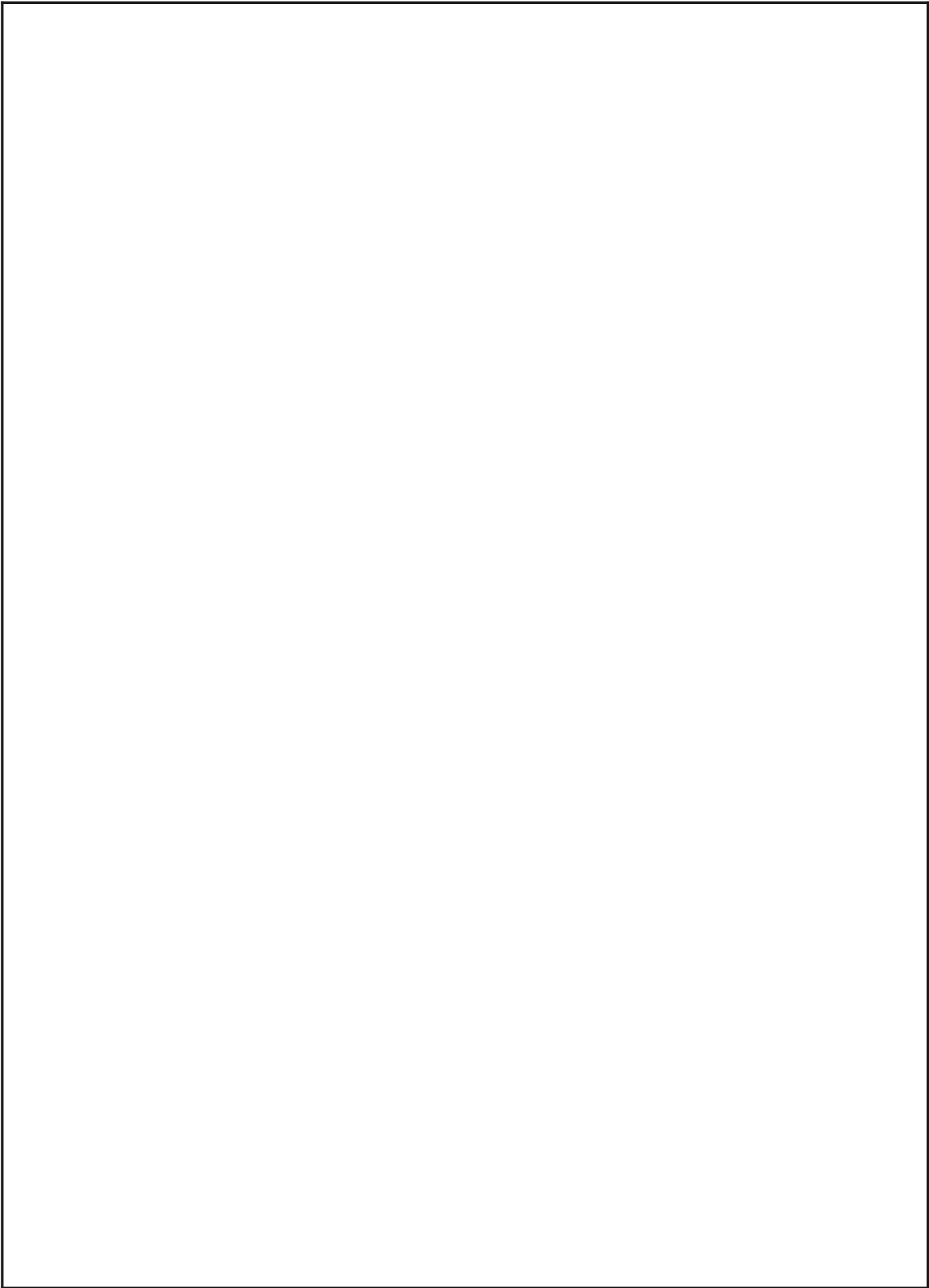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도로 지정 현황도(노학동 1000-512, 4m²)

축 척 NON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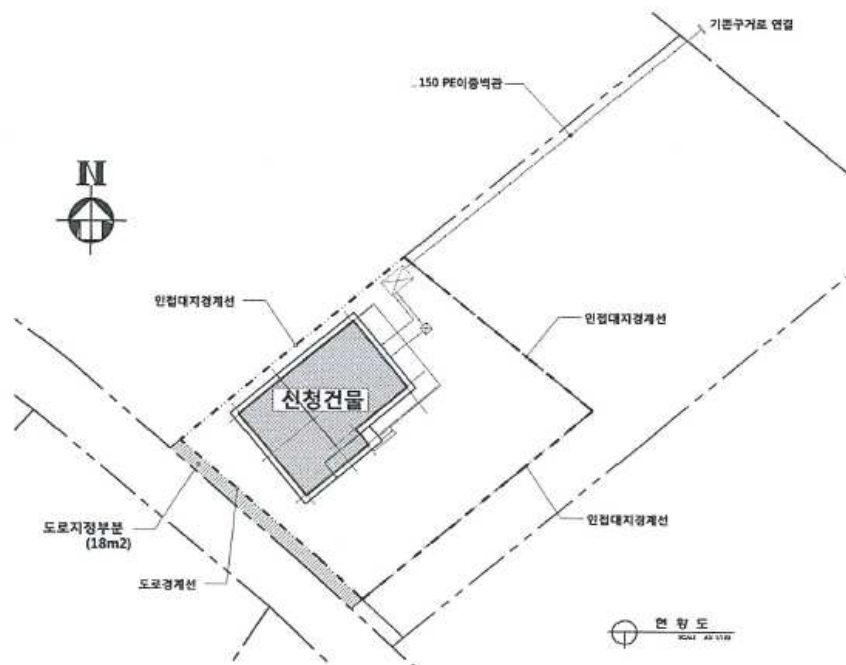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-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도로 지정 현황도(노학동 1000-513, 18㎡)

축 척 NONE

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○ 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」가 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로 개정(시행, 2016.1.1.)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및 목적의 조례명 변경 (안 제1조)
- 사용료의 감면 내용 변경 (안 제7조)
- 운영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10조)
- 상위 조례 내용 반영하여 “체육청소년시설”을 “청소년수련시설”로 수정 (안 별지서식)
-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(안 별지 제1호서식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6년 8월 15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 ·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469-6) 속초시청
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(전화: 033-639-2686, FAX: 033-639-2739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(033-639-26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늦어도 징수익일”을 “징수한 다음 날”로, “불입하여야”를 “납입하여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사용료의 감면요율 등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.

②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란 국제적인 행사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자문위원회 구성)”을 “(운영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조례 제16조의 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운영위원회”로, “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”을 “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”으로, “문화체육과장, 여성가족과장”을 “청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제6호 중 “어린이”를 “아동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제2호서식, 제3호서식, 제4호서식,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		생년월일	
사용 목적				
사용 내용				
경기·행사명				
사용 기간				
임원 또는 지도위원	임 원	명	사용자	명
관 랑 권	특별관람권	원	매	단체, 군·경 매 원
	일반관람권	원	매	초 대 권 매 원
	학생관람권	원	매	기 타 매 원
기 타				
사 용 료	원 납부년월일 . .			
「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인) 숙초시장 귀하				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

신 청 인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사용목적				
허가시설 및 허가내용				
허가기간	년 월 일 년 월 일	시부터 시까지		
관람권 또는 기 타				
허가조건				
경기·행사명				
「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함. 년 월 일 속 초 시 장				

입 장 권

입장권원부	입 장 권
No.	No.
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	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입장권
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	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
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	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

이 용 권

이용권원부	이 용 권
No.	No.
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	숙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권
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	일금 원 (오전, 오후, 야간)
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	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장

검인신청서

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에서

년 월 일부터

년 월 일

까지 실시예정인

행사(

경기대회)시에

입장권 및 임원증에 대한 검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

1. 입 장 권

특별권	원권	매	(예매	매)
일반권	원권	매	(예매	매)
군, 경, 학생, 어린이권	원권	매	(예매	매)
초대권	원권	매		
단체일반권	원권	매		
단체 군, 경, 학생, 어린이권	원권	매		

2. 임원증 및 선수증

임원증	매
선수증	매

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 :

성 명 :

속초시장 귀하

[별지 제8호서식]

검 인



3
c
m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속초시체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</u>		<u>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</u>		<u>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 <u>속초시체</u>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속초시 청</u>		<u>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</u>
<u>육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</u> 」의		<u>례</u> 」-----		-----.
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			
목적으로 한다.				
제2조(사용료의 납부) 각종 사용료		제2조(사용료의 납부) -----		-----
는 분임징수관이 사용당일에 사용		-----		-----
자로부터 전액을 징수하여 세입				
결의하고 늦어도 징수익일 오전까		<u>징수한 다음 날</u> -----		
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.		<u>납입하여야</u> ---.		
제3조(사용허가신청) ① 조례 제4조		제3조(사용허가신청) ① ---- 제4조		
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사용허가		<u>에 따른</u> -----		-----.
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				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		② 제1항에 따라 -----		-----
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		-----		-----
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		<u>따른</u> -----		-----.
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				
한다.				
제7조(사용료의 감면) 조례 제8조의		제7조(사용료의 감면요율 등) ① 조		
<u>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에 따</u>		<u>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</u>		
<u>른 요율은 별표와 같이 하고, 기</u>		<u>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.</u>		
<u>타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를</u>		②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의 그 밖		
<u>말하며 사용료의 감액은 5할을 초</u>		<u>에 특별한 사유란 국제적인 행사</u>		
<u>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시장의 승</u>		<u>를 말하며 사용료의 감면요율은 5</u>		
<u>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</u>		<u>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u>		

다.

1.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

2.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 행사

제10조(운영자문위원회 구성)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체육과장, 여성가족과장, 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조례 제16조의 운영위원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운영위원회-----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사무소 운영 ----

----- 청소년수련시설 담당부서장-----
-----.